

식물방역법 개정 시행에 의해 규정되는

과수화상병 관련 농업인 준수사항

관련법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- ✓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합니다.
⇒ 식물방역법 제33조의4(자료·정보 제공의 요청 등)
- ✓ 농업인은 과수화상병의 발생 또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 교육을 연 1회 (1시간 이상) 이수해야 합니다.
⇒ 농업기술센터 교육추진 예정(2025.1.),
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온라인교육 연중이수가능(<http://hrd.rda.go.kr>)
- ✓ 농업인은 작업도구 소독, 예방약제 살포, 건전묘목 구입, 병해충 발견의 신고 및 그 밖의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✓ 농업인은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에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를 지시해야 합니다.
⇒ 식물방역법 제33조의5(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)

⚠ 예방 수칙

1. 농작업 전후 농작업자의 손, 작업복, 신발, 모자, 장갑 및 작업도구를 철저히 소독
2. 작목별 병해충 발생 시기에 맞춰 등록된 농약을 살포(개화 전 1회+개화기 2회)
3. 종자의 생산·판매 이력이 기록·보관되는 묘목을 구입
4. 재배지 내 과수화상병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·조사하고, 과수화상병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신고
5. 병해충 발생 예찰에 적극 협조



✓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감액 기준	감액 비율
발생 미신고 (발생비율10%초과시 미신고한 것으로 간주, 손실보상금 감액 적용됨)	60%
예찰조사, 분포조사 거부·방해·회피	40%
교육 미이수	20%
작업도구 소독 미실시, 예방약제 미살포, 건전묘목 미사용 등 예방 수칙 미준수	10%
농작업자 예방 교육 미실시 및 예방 수칙 준수 미지시	20%
방제명령 위반 ▶ 방제대상 식물 이동·양도 금지 위반 ▶ 방제대상 식물 소독·폐기 명령 위반 ▶ 물품·시설 소독·사용제한 명령 위반	100% 60% 20%
10년 이내* 동일과원 재발생시 * 시행 이후 발생 과원 적용	2회 20% 3회 50% 4회 이상 80%

⇒ 제38조(손실보상)

과수화상병 증상을 숙지하고, 농가 자가 예찰을 강화합시다!!

※문의사항: 농업기술센터 신소득작물팀(930-8071~3)

